

第23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9.12.22. ~ 12.23.)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3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 회 식	183
II. 제23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85
III. 제23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91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197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일부개정조례안	199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3
4. 2009년도제5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21
5. 조례심사보고서	229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9년 12월 22일 (화요일) 13시 58분

開會式順(第235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객종수)

(13시 58분 개식)

(일동 착석)

● 의사담당 객종수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14시 00분 폐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9년 11월 22일 (화요일) 14시 00분

議事日程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35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제5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35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일 위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2009년도제5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4시 00분 개의)

● 의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우승구 부교육감께서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창립 총회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박정수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상황 등에 관한 보고가 있습니다.

● 의사과장 김석환

의사과장 김석환입니다.

임시회 소집 요구 및 안건 접수 상황과 안건 이송에 대한 처리결과, 이번 회기 중 처리하여야 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제5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이상일 교육위원 외 6인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제23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3회 정기회에서 처리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3회 정기회에서 처리하여 이송한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가칭 옥산유치원 설립비 외 9건의 사업에서 총 51억 5,002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2009년 12월 15일 도의회 제2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1건의 조례와 2009년도제5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정수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35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02분)

● 의장 박정수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회의 산회 후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과 공유

재산 고나련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12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

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03분)

● 의장 걱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금회 본 위원을 포함한 교육위원 7명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산종류의 명칭을 정리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 개정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으로 재산종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포함하여 보존용 재산으로 하고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며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 금액을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걱정수

[제235회-제1차 본회의]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일 교육위원 외 6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하신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제5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 07분)

● 의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제5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에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고견을 주시는 박정수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제5회공유재산관

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2009년 12월 14일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 산정 고시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79명에서 39명이 증원된 2,918명으로 변경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 소속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을 2,866명에서 39명이 증원된 2,905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다음은 2009년도제5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의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피산군 피

산읍 서부리 278-8번지 외에 2필지의 1,757㎡를 괴산지역 공동 관사 또는 교육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괴산군 재산과 교환 취득하고자 하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으로 폐교인 괴산 칠성초등학교 외사분교장의 토지 8,465㎡와 건물 1,244㎡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폐교인 칠성초등학교 외사분교장은 괴산 같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권역 활성화 센터 조성을 위하여 괴산군청으로부터 공유재산 교환 요청이 있어 주민과 동문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면밀히 검토한 결과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괴산군 재산인 괴산읍 서부리 278-8번지 외 2필지와 교환 처분하고자 합니다.

▶ 참 조 : 2009년도제5회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별첨 4)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제5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정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14시 10분)

● 의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를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중 2009년도제5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장방문과 사전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하신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로 즉시 회부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2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5회-제1차 본회의]

이번 제2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다.
정무 위원님과 김부웅 위원님께서 수고 제23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14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의장 박정수, 부의장 김부웅,
위원 김병우, 서수웅, 성영웅, 이상일, 정무.

○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이기용, 교육국장 이수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산업정보평생과 이열훈,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총무과장 황익상,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재무과장 김길흠,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 ▶ 2009년도제5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별첨 4)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9년 11월 23일 (수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제5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일 위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2009년도제5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수철 교육국장께서는 삼락회 정기총회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정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교육위원 7명 전원의 연서로 발의된 안건으로써 사전에 심도

[제235회-제2차 본회의]

있는 협의를 하신 바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 의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병우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15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2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한 바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2009년 12월 14일자로 고시된 2010년부터 2011년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0년 내지 2011년 표준정원은 정원산식에 의하여 학교신설과 학급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것으로 2007년도에 고시한 표준정원 3,031명에서 2009년에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라 5%인 152명이 감축되어 현재 운영중인 정원 2,879명보다 39명이 증가

된 2,918명입니다.

동 조례는 학교 신·증설에 따른 소요인력 확보와 교육현장 중심의 지원인력 배치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되어 정원 총수가 39명이 증원된 표준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단위기관별 정원 책정 시 기관별 기능 및 인력배치 현황을 분석하여 행정수요에 상응한 합리적인 정원 배치 기준을 수립하여 종류별 직급별로 균형 있게 안배될 수 있도록 정원책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행청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5)

(끝에 실음)

● 의장 박정수

김병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

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제5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 05분)

● 의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제5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하시어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또한 심도있는 협의를 하신 바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제235회-제2차 본회의]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제5회공유재
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제5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35회 충청
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
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의장 곽정수, 부의장 김부웅,

위원 김병우, 서수웅, 성영웅, 이상일, 정무.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우승구,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산업정보평생과 이열훈,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총무과장 황익상,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재무과장 김길흠,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5)

제23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9. 12.

의 장 곽 정 수



위 원 정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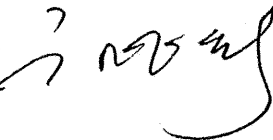


위 원 김 부 웅



의사국장

구 명 화



(별첨 1)

의 사 일 정 (안)

제23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9. 12. 22. ~ 12. 23.(2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2월22일(화) 14:00	☐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23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9. 12. 22. ~ 12. 23. (2일간)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9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산 회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본회의 종료 후	☐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소위원회 종료후	☐ 현장방문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월23일(수) 11:00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9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산 회 ☐ 폐 회	의 결 의 결 의 결

(별첨 2)

의안번호	제 1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12월 일 (제 235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상일 위원 외 6명
제출연월일	2009년 12월 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9. . .

제 출 자 : 이상일 위원 외 6명

1.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산종류의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산종류 명칭 변경
 - 공유재산을 3분류 체계에서 2분류 체계로 단순화하여,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포함하고,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
-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기준 조정(안 제6조)
 -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금액을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자율성 확대와 행정력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 생략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같은 호 가목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같은 호 나목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각각 한다.

제3장의 제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9조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항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3조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4조 제목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중 "행정·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5조 제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6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42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임사무) ① (생 략)	제4조(위임사무)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u>행정재 산·보존재산</u> 의 관리와 사용· 수익허가	가. ----- <u>행정재 산</u> 의 ----- -----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u>잡종재산</u> 의 관리와 대부	나. ----- <u>일반재산</u> -----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2. (현행과 같음)
나.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u>행정재산·보존재산</u> 의 용도변 경·폐지	나. ----- <u>행정재산</u> ----- ----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u>잡종재산</u> 의 매각·교환·양여· 대부·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	다. ----- <u>일반재산</u> ----- -----
라. 교육청의 <u>행정재산·보존재산</u> 의 관리와 사용·수익 허가	라. ----- <u>행정재산</u>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u>행정재 산·보존재산</u> 의 관리와 사용·수 익 허가	가. ----- <u>행정재산</u> ----- -----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u>잡종재산</u> 의 관리와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	나. ----- <u>일반재 산</u> -----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충청북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① (생략) 2.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② (생략)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시·군의 읍·면지역에 소재	----- ----- ----- ----- ----- -----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① (현행과 같음) 2. 행정재산----- ----- ----- 3. 일반재산----- ② (현행과 같음)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3. ----- 5천만원 ----- ----- 4. ----- 행정재산----- ----- ----- 가. ----- ----- ----- 5천만원 ----- ----- 나. -----
--	--

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 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u>2천만</u> 원 이하의 재산	----- ----- 5천만 원 -----
제3장 <u>행정재산 및 보존재산</u>	제3장 <u>행정재산</u>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공 무원은 관리하는 <u>행정재산·보 존재산</u>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 및 처분) ----- ----- <u>행정재산</u>----- ----- ----- -----.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u>행정재산·보존재산</u>을 사용 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 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 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 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 다. ② <u>행정재산·보존재산</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u>행정재산</u>----- ----- ----- ----- ----- ----- -----. ② <u>행정재산</u>----- ----- ----- ----- -----.
제21조(사용·수익허가) <u>행정재산· 보존재산</u>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 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 <u>행정재산</u> ----- ----- -----.

제23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

제23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 행정재
산-----

 -----.

제24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 행정재산-----

 -----.

② -----
행정재산-----

 -----행정재산-----

 -----.

③ ----- 행정재산-----

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과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제25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제4장 잡종재산

제26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
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
여야 한다.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잡종 ① -----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재산-----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

⑤ _____ 행정 재산

제25조(일반재산 -----)

제4장 일반재산

제26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

① _____ 일반
재 산 _____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② -----

----- 일
반재산-----

③ -----일반
재산-----

④ -----

일반재산-----

⑤ -----

----- 일반재산-----

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1 항에 따라 <u>잡종재산</u>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 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 한다)으로 한다.	제42조(신탁의 종류) ----- ----- <u>일반재산</u>----- ----- ----- ----- -----.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 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

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3.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별첨 3)

의안번호	제 2호
의결 연월일	2009년 월 일 (제 235 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9년 12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9. 12. 15.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재 산정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9 - 40, 2009. 12. 14)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879명에서 39명이 증원된 2,918명으로 함(안 제2조)
-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변동없음
 -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2,866명⇒ 2,905명(증 39명)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879명"을 "2,91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866명"을 "2,905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인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2,879명</u> 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u>2,866명</u>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2,918명</u> 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u>2,905명</u>

관계법령 발췌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09.7.22 대통령령 제21632호)

제14조 (표준정원의 책정) ①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하 "표준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사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 (정원의 규정) ①시·도 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9>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 급학교 정원

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령제1호)

제3조 (표준정원의 산정)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교육

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

②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로 정원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영 제14조제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보정비율 1.03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이하 "보정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매 2년마다 8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별표 1] <개정 2004.1.30>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산식(제3조제1항관련)

1. 특별시·광역시

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 $(5.793702 \times \text{학교수 증감분} \times 0.6 + 0.1919011 \times \text{학급수 증감분} \times 0.4) \times 1.15 + 70.9 \times 2$ 국6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57×4 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40.3×2 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2. 도

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 $(5.022132 \times \text{학교수 증감분} \times 0.6 + 0.3594281 \times \text{학급수 증감분} \times 0.4) \times 1.15 + 61.6 \times 2$ 국6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51.5×4 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31.6×2 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비 고

1. 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은 각각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text{현정원} + \{1.720094 \times (\text{학급수} \div \text{학교수}) \text{의 자연로그값}\} \times \text{학교수} + 168.1659 \times 2 \text{국6과 지역교육청수} + 177.8311 \times 4 \text{과 지역교육청수} + 105.4566 \times 2 \text{과 지역교육청수} + 161.7123] \div 2$

나. 도

$[\text{현정원} + \{1.910288 \times (\text{학급수} \div \text{학교수}) \text{의 자연로그값}\} \times \text{학교수} + 123.1787 \times 2 \text{국6과 지역교육청수} + 49.33297 \times (2 \text{과 지역교육청수} + 4 \text{과 지역교육청수}) + 225.1432] \div 2$

2. 학교수·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는 현정원을 조정한 연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학교수·학급수 및 지역교육청 증감분은 각각 현정원을 조정한 연도에 대한 당해연도의 증감분을 말하며, 해당연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2009.12)

구 분	표준정원	보정정원	비 고
충청북도교육청	2,918	3,005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의 3%

(별첨 4)

의안번호	제 3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12월 일 (제235회)

2009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9년 12월 일

2009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9. 12.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교 환
- 취득

(단위 : m², 천원)

구분	취득재산명	소재지	수량	금액
토지 (교환)	괴 산 군 공유재산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278-8번지의 2필지	1,757	390,870

- 처분

(단위 : m², 천원)

구분	처분재산명	소재지	수량	금액
토지 (교환)	외사분교장 (‘09.3.폐교)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52번지의 8필지	8,465	447,025
건물 (매각)	외사분교장 (‘09.3.폐교)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52번지	1,243.59	180,522
계		2건	9,708.59	627,547

제안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

붙임 : 배치도면 각 1부.

2009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2009년상반기			2009년하반기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취득합계				1	1,757	390,870	1	1,757	390,870
	계	토지			1	1,757	390,870	1	1,757	390,870
		건물								
		기타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1	1,757	390,870	1	1,757	390,870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처분	처분합계				2	9,708.59	627,547	2	9,708.59	627,547
	계	토지			1	8,465	447,025	1	8,465	447,025
		건물			1	1,243.59	180,522	1	1,243.59	180,522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1	1,243.59	180,522	1	1,243.59	180,522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1	8,465	447,025	1	8,465	447,025
		건물								
		기타								

2. 교환대상 재산 목록

○ 취득

(단위 : m²,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취 득 시 기	취득(변경) 사유	취 득 소유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					
괴산증평 교육청	토지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278-8외 2필지	1,757	390,870	하반기	- 공동관사 부지확보 - 교육시설 부지활용 - 괴산군청 공유재산 교환요구	교육감	(도면 1)
합 계			1,757	390,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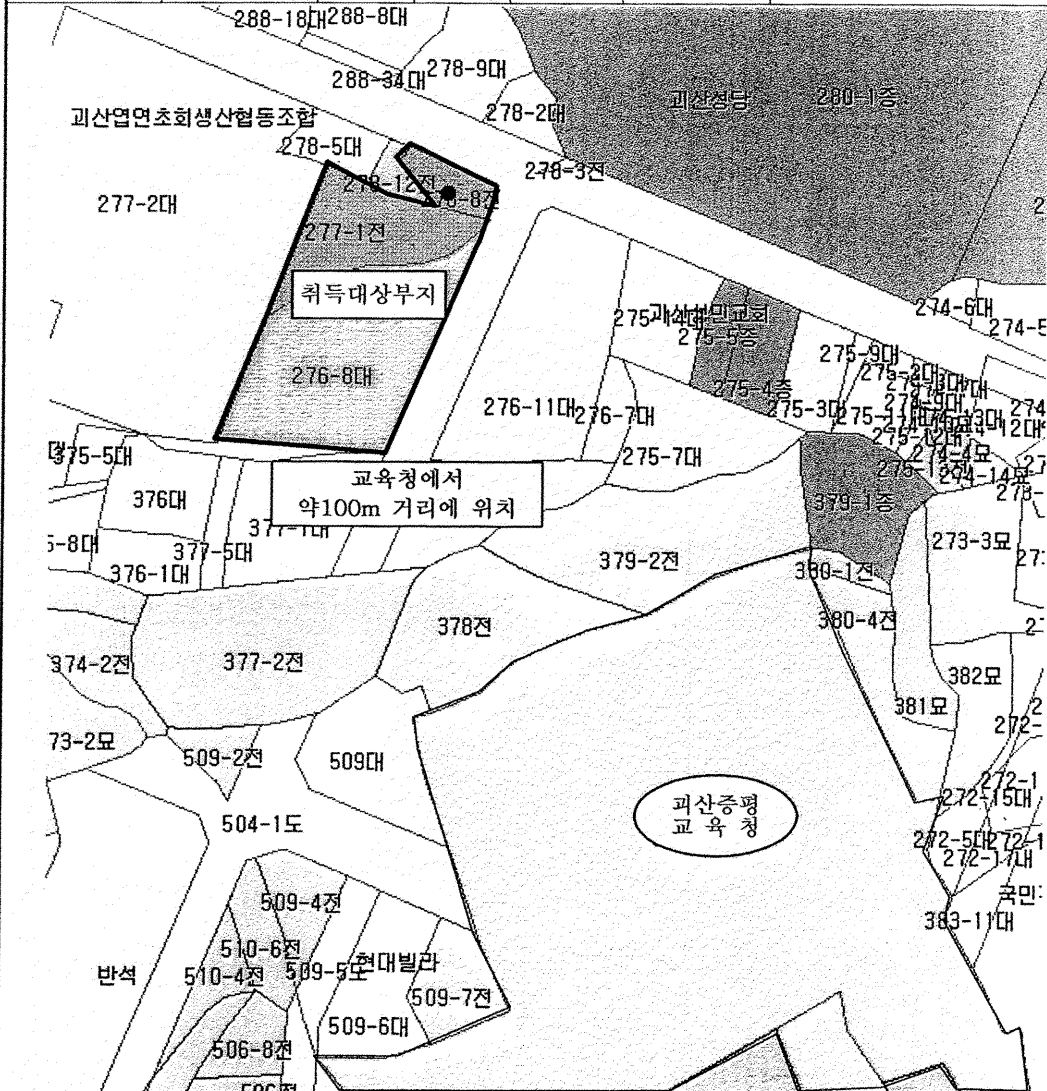
○ 처분

(단위 : m²,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처 분 시 기	처분(변경) 사유	교환 (매도) 요청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					
괴산증평 교육청 (외사폐교)	토지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8,465	447,025	하반기	- 괴산 같은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권역활성화센터 조성 -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적음	괴산 군수	(도면 2)
	건물	152외 8필지	1,243.59	180,522	하반기			(도면 3)
합 계			9,708.59	627,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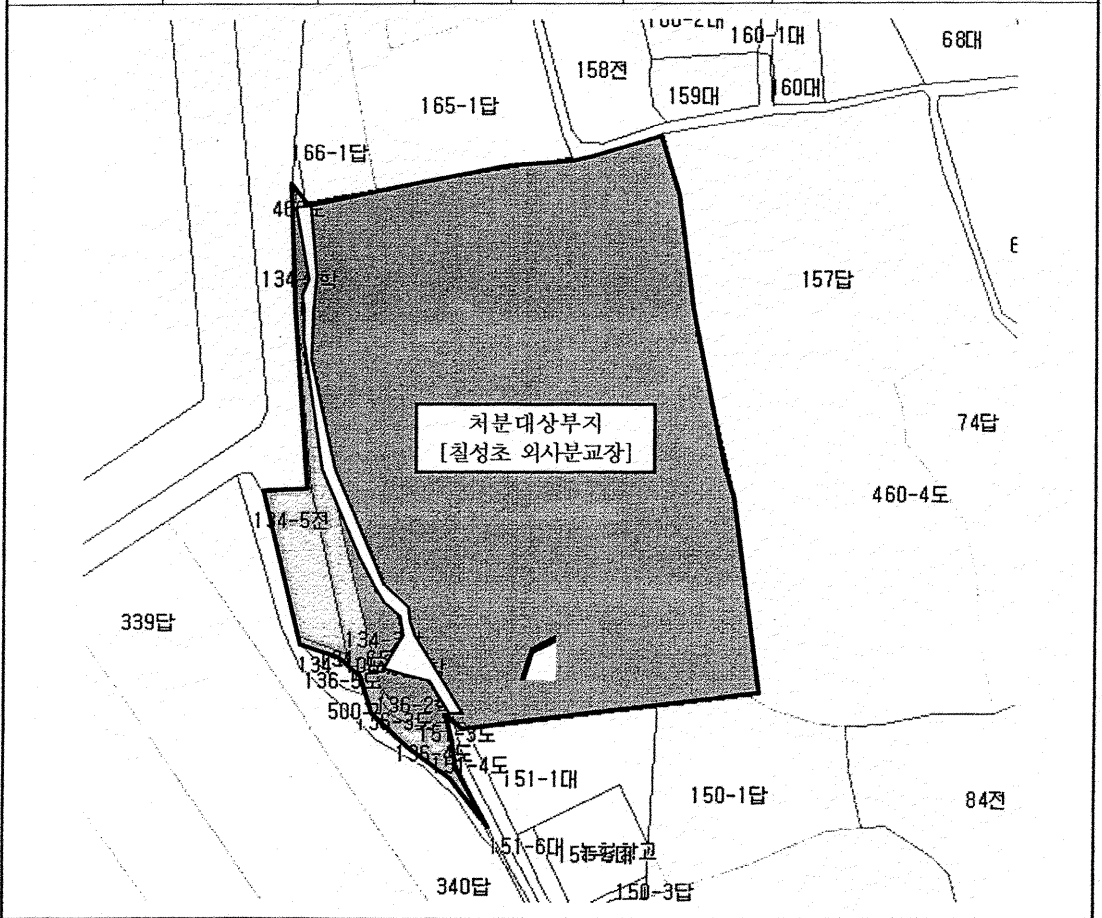
도면 1) 괴산증평교육청 토지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공유재산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278-8	대	128	33,728	- 공동관사 건립 부지확보 - 향후 교육시설 부지활용
		276-8	대	1,153	258,848	
		277-1	전	476	98,294	
	계	3필지		1,757	390,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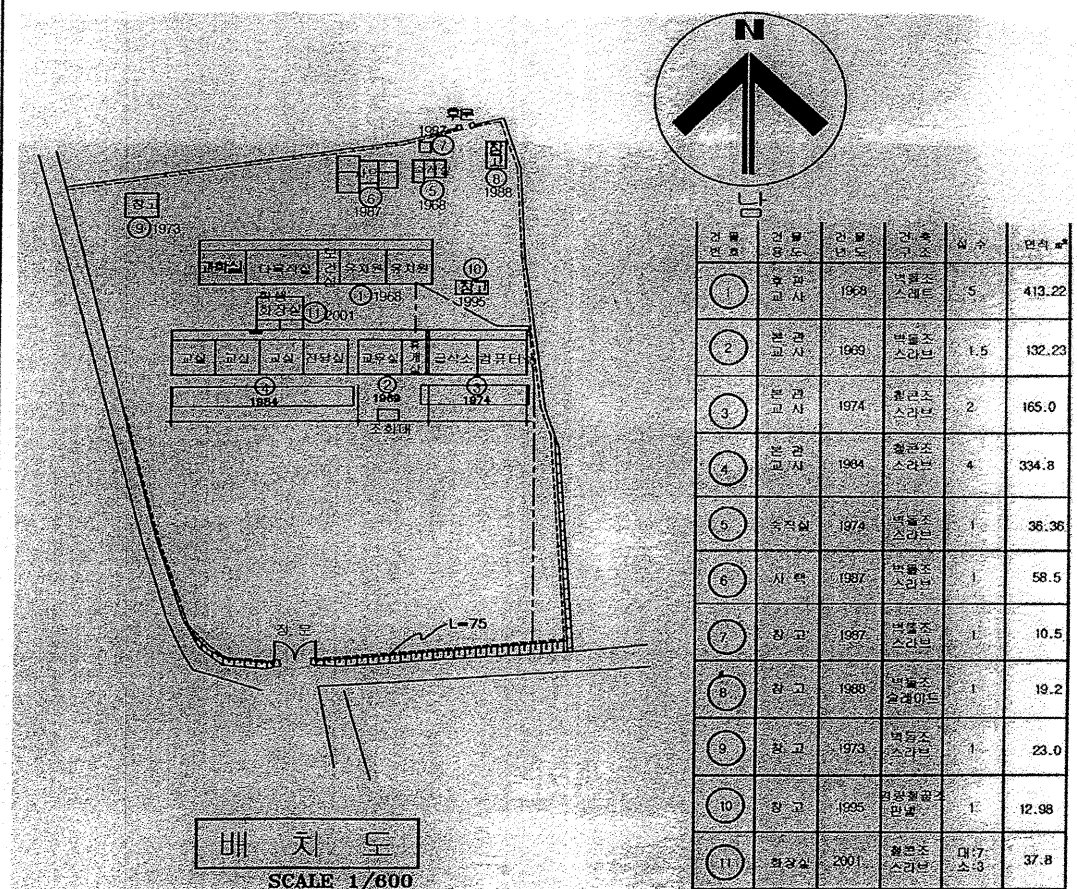
도면 2) 칠성초 외사분교장(폐교) 토지 처분 배치도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일반재산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52	학	7,597	417,835	- 괴산군수 매도요청 - 같은권역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권역활성화 센타』 조성 -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적음
		134-1	학	70	3,850	
		134-3	학	122	6,710	
		134-5	전	314	11,304	
		134-6	도	250	2,750	
		134-10	도	16	176	
		136-2	학	76	4,180	
		136-3	도	17	187	
		151-3	도	3	33	
	계	9필지		8,465	447,025	



도면 3) 칠성초 외사분교장(폐교) 건물 처분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교사1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52	시.벽.슬	413.22	49,586	- 괴산군수 매도요청 - 같은 권역 농촌 마을 종합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권역활성화 센터』 조성 -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적음
교사2			철.콘.스	499.80	89,964	
교사3			시.벽.스	132.23	17,190	
숙직실			시.벽.스	36.36	6,908	
사택			시.벽.스	58.50	11,700	
창고1			시.벽.스	10.50	525	
창고2			시.벽.스	23.00	1,150	
창고3			시.벽.슬	19.20	960	
창고4			경.철.골	12.98	649	
화장실			시.벽.스	37.80	1,890	
	계		10동	1,243.59	180,522	



(별첨 5)

제23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9. 12. 23. 11:00)

조례 심사 보고서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2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9년 12월 22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9년 12월 22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 장 길)

가. 제안이유

-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재산정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9-40, 2009. 12. 14.)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879명에서 39명이 증원된 2,918명으로 함(안 제2조)
 -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변동 없음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 2,866명 ⇒ 2,905명(증 39명)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하여 2009. 12. 14.자로 고시된 2010년 ~ 2011년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기 위한 것으로,
- 2010년 ~ 2011년 표준정원은 정원 산식에 의하여 학교 신설과 학급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것으로, 2007년도에 고시한 표준정원 3,031명에서 2009년에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라 5%인 152명이 감축되어 현재 운영중인 정원 2,879명보다 39명이 증가된 2,918명임
- 동 조례는 학교 신·증설에 따른 소요인력 확보와 교육현장 중심의 지원인력 배치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되어 정원 총수가 39명이 증원된 표준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단위기관별 정원 책정시 기관별 기능 및 인력배치 현황을 분석하여 행정수요에 상응한 합리적인 정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 종류별·직급별로 균형 있게 안배될 수 있도록 정원 책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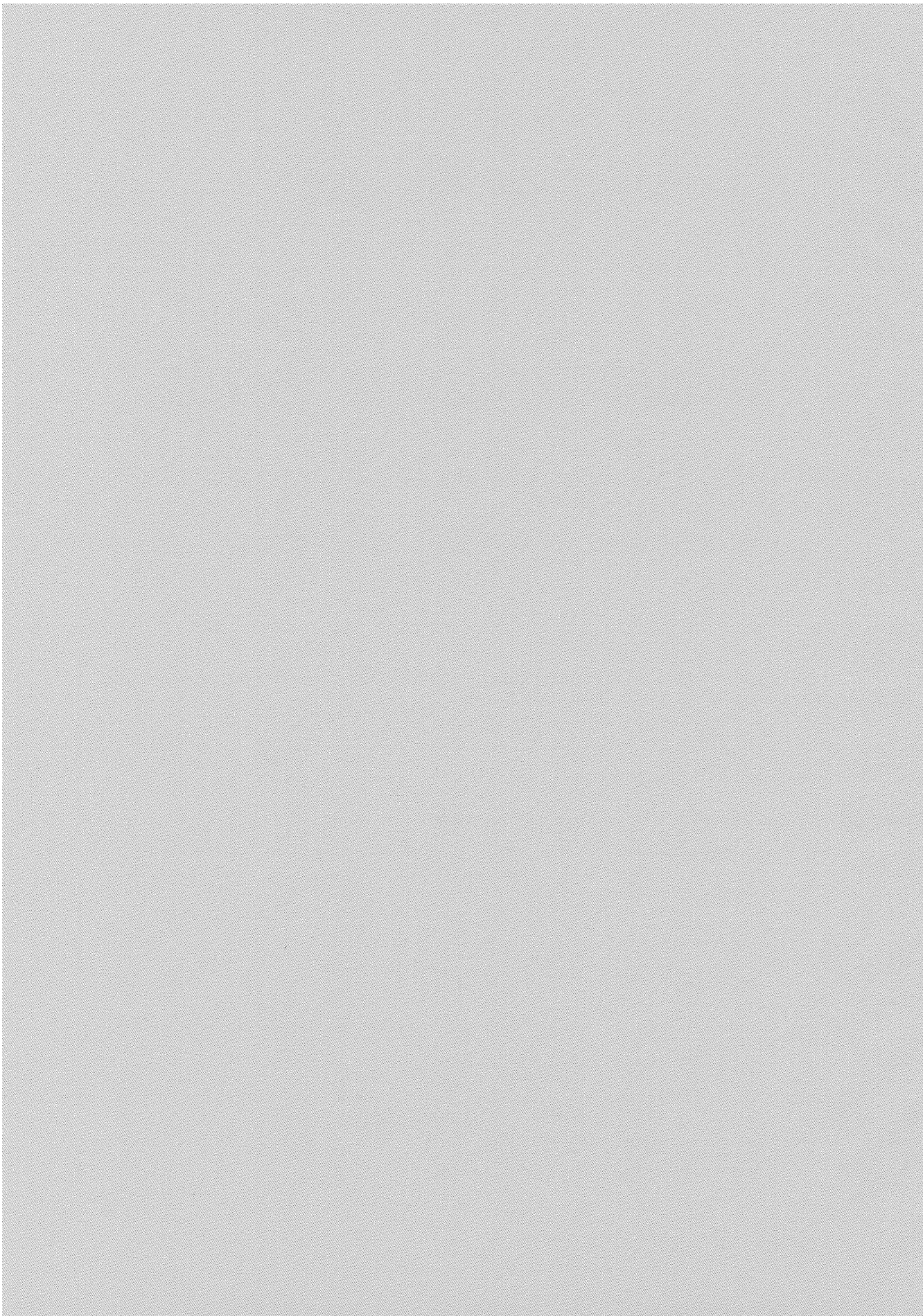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第23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23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237
--------------------------------------	-----

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243
-------------------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9년 12월 22일 (화요일) 14시 16분

議事日程 (제235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16분 개의)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

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
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

했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견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금번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병우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김병우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우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에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병우

저를 금번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성영용 위원님 그리고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가 심도 있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간사선출의견

(14시 18분)

● 위원장 김병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교육위원 정무입니다.

금번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로 김부웅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김부웅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부웅 위원님

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웅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부웅

김부웅 교육위원입니다.

인기가 좋은 것도 괜찮네요, 아홉 번 씩이나 하게 되니까.

위원장님을 도와서 조례가 원만히 잘 심의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4시 20분)

● 위원장 김병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하루로 하여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오늘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되 질의 및 답변은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계서는 회의기록을 위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21분)

● 위원장 김병우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 조례에는 증원된 39명을 포함한 총 정원만 규정하고 있는데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국장님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분 중에서 조례에는 전체 인원만 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 소속 및 각급 학교에 나가는 정원에 대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지역별, 각 기관별 정원수는 조례에 위임을 받은 규정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설명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기관별 정원은 총 정원만 규정하고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그리고 공립의 각급 학교 등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

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위기관별 정원 책정을 할 때 기관별 기능이나 인력배치 현황을 분석해서 행정수요에 상응한 합리적인 정원 배치 기준을 수립해서 기관별, 직급별로 균형 있게 안배될 수 있도록 정원책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나시는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께 그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항상 우리 충북교육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또 하시는 일마다 강성하 시기를 위원님들 대신해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병우, 간사 김부웅,

위 원 서수웅, 성영용, 이상일, 정무.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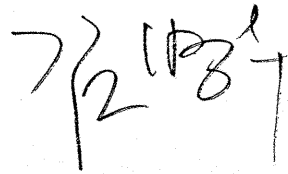
- ▶ 조례심사소위원회의사일정안(별첨 1)

제23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09. 12. .

위 원 장

김 병 우



(별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23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9. 12. 22. (화) 본회의 종료후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